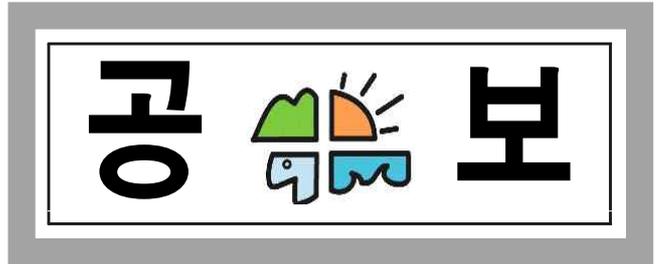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38호 2014년 2월 26일(수)

공 고

-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속 초 시 장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가. 장애인 차별조항 시정
- 나.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각종 박물관·미술관과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의 협약서 등을 체결 할 경우 상호할인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
- 다. 법규용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자구 및 문장은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법규해석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각종 협약서 등을 체결 할 경우 상호할인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0조)
- 나. 관람 및 시설 이용 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에 대한 문구를 삭제 함(안 제13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속초시박물관 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주 소 : 속초시 신흥2길 16호 속초시립박물관 관리담당(217-030)
- 전 화 : 033-639-2974
- FAX : 033-639-2430

4. 참고사항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를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이란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제2조제4호 중 ““군인”이라 함은”을 ““군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른”이란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6.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제2조제7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여행사”라 함은”을 ““여행사”란”으로, 같은 조 제9호 중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이라 함은”을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이란”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게”를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체”라 함은”을 ““전세버스운송사업체”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한다”를 “맡아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취소한 때”를 “취소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무료관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해당하는 자에”를 “해당하는 사람에”로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하는 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하는 자”를 “출입하는 사람”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동행하는 자 1인”을 “동행하는 사람 1명”으로, 같은 항 제9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으로, 같은 항 제10호 중 “참여하는 자”를 “참여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기존의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미술관과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유료관람시설 등과의 상호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협약서를 체결 할 경우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 협의한 요율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퇴장을 명”을 “퇴장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가 없는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3.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5. 제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4조제2호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된다”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u>의한</u>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함은</u>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의 역사와 미래를 재조명 하고 그에 관한 유물의 수집·전시 및 연구활동을 하는 시설과 이북 5도 지방의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유물 및 발해사를 연구하고 관련유물을 수집·보관·연구하고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u>“어린이”라 함은 만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생 포함)</u> 3. <u>“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자</u> 4. <u>“군인”이라 함은</u>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u>“어른”이라 함은 만 20세이상 64세 이하인 자</u> 6. <u>“노인”이라 함은 만 65세이상인 자</u> 	<p><u>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u>따른</u>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u>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의 역사와 미래를 재조명 하고 그에 관한 유물의 수집·전시 및 연구활동을 하는 시설과 이북 5도 지방의 민속자료 및 향토역사유물 및 발해사를 연구하고 관련유물을 수집·보관·연구하고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u>“어린이”이란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u> 3. <u>“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u> 4. <u>“군인”이란</u>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u>“어른”이란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u> 6. <u>“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u>

7. “단체”라 함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30인 이상이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9.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이라 함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전세버스운송사업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 9. (생략)

10. 기타 박물관 및 문화촌 운영 등 문화에 관한 사항

11. ~ 13. (생략)

제4조의2(업무협력 및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단체

2. (생략)

3.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3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9.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이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전세버스운송사업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박물관 및 문화촌 운영 등 문화에 관한 사항

11. ~ 13.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업무협력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실향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단체

2. (현행과 같음)

3.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 및 지원되고 있는 월남이북 5도민 관련 단체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②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 (생략)

5. 기타 시설물의 수리,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생략)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③ (생략)

제9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 전시물을 관람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전시실 또는 기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고 별표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2.(생략)

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 및 지원되고 있는 월남이북 5도민 관련 단체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설물의 수리,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 전시물을 관람하는 사람은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전시실 또는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고 별표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때

④(생략)

⑤ 박물관에서 개최·운영하는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무료관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생략)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6. (생략)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8. (생략)

9. 속초시민(속초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 단, 매주 일요일과 설날·추석·속초시민의 날 당일에 한한다.

1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3.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

⑤ 박물관에서 개최·운영하는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

8. (현행과 같음)

9. 속초시민(속초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 단, 매주 일요일과 설날·추석·속초시민의 날 당일에 한정한다.

1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11. (생략)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3. (생략)

<신설>

② 다음 각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에서 이북5도 가옥은 제외한다.

1. ~ 4. (생략)

제12조(요금표의 게시) 관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한다)에 대한 요금표는 인터넷과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매포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 및 이용시설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가 없는 만 6세 이하의 미취

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3. (현행과 같음)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미술관과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유료관람시설 등과의 상호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 협의한 요율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에서 이북5도 가옥은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요금표의 게시) 관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한다)에 대한 요금표는 인터넷과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매포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 및 이용시설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가 없는 만 6세 이하의 미취

학아동 또는 정신이상자

- 3.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 4.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 5.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14조(행위의 제한) 관람 및 시설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다만, 야외시설 이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6. (생략)

제16조(자문위원회) 박물관의 자료구입 및 전시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립박물관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 5. (생략)

제17조(자료의 취득) ①시장은 전시·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기증, 관리전환, 구입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다만, 구입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감정원의 감정을 거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학아동

- 3.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5. 제14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4조(행위의 제한) 관람 및 시설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현행과 같음)
-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다만, 야외시설 이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3.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문위원회) 박물관의 자료구입 및 전시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립박물관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자료의 취득) ①시장은 전시·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기증, 관리전환, 구입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다만, 구입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감정원의 감정을 거치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소장품의 관리) ① 소장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대장과 자료등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③ (생략)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2. (생략)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생략)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소장품의 관리) ① 소장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대장과 자료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현행과 같음)